

인천광역시서해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hae.go.kr>

선

기관의장

람

제2031호 2026. 10. 6.(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60호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
인가 고시 ——— 1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40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—— 3
-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47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
주택정비관리계획변경(안) 주민공람공고 ——— 10

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-160호

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

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(경미한 변경)인가 신고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0. 6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칭: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치: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494-2번지 외 30필지
- 나. 면적: 8,052.1m²
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가. 착수예정일: 미정
- 나. 준공예정일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합명칭: 석남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대웅)
- 나. 사무소 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23번안길 19, 2층

5.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내용

- 조합임원 및 대의원 변경

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-2040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. 10. 6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○ 개정이유

-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헌장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,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을 임의규정화 함
- 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

○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(참조: 총무과, 전화 560-4515, 팩스 560-2710, 이메일 minbang9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헌장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,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구성을 임의규정화 함(안 제14조제1항)
- 나. 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(안 제1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실, 가정보육과 합의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부분 중 “둔다”를 “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현장심의위원회) ① 현장의 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14조(현장심의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.</u>	3. <u>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·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·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~ ⑤ 생략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-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-2047호

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(안) 주민공람 공고

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동 5-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,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
2026. 10. 6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가. 공람기간: 2026. 10. 6. ~ 2026. 10. 20. (14일간)

나. 공람사유: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(안)
주민공람

다. 공람장소: 서해구청 주택과(서해구 서곶로 299, 3층)

라. 공람내용: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(안)

마. 기타사항: 본 공람공고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바. 관계도서: 서해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

사. 의견제출: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 또는 E-mail(dhrhdns1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 사항이 아니며, 심의 등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관리계획 변경(안) 1부.

2. 관련도면 1부.

3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(안) 의견서 1부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(안)

1.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구분	관리지역 명칭	위 치	면적(㎡)
기정	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	서해구 가정동 5-92번지 일원	36,689

2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(변경)

1) 토지이용 기본계획(안)

-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(2만㎡ 미만)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구획하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계획(4만㎡ 미만)

2) 정비기반시설 설치 기본계획(안)

구분	계 획	비고
정비기반시설	- 소로3-1호선(L=23m, B=5) - 소로3-A호선(L=90m, B=6) → 소로3-A호선(L=145m, B=6) 변경	소로3-A호선 연장 변경
	- 소공원(A=4,200㎡) 폐지 → 경관녹지(A=5,443㎡) 신설	- 계획세대수 증가에 따른 녹지면적 확보 - 입지 여건 고려하여 공원폐지·녹지신설

3) 교통처리 기본계획(안)

- 변경없음

4) 건폐율,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

가)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

구분	면 적(㎡)			구성비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36,689	-	36,689	100.0	-
제3종일반주거지역	36,689	감)36,689	-	-	
준주거지역	-	증)36,689	36,689	100.0	

○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 적 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서해구 가정동 5-92번지 일원	제3종일반 주거지역	준주거 지역	36,689	500%	◦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로 인한 용도지역 상향

나)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기본계획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름

다)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(안)

- 공공임대주택 총 294호 공급 예정

구분	사업구역	위치	전체세대수	임대주택 세대수	임대주택 인수예정자	비고
기정	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(가로주택 정비사업)	가정동 5-92번지 일원	1,396	232	LH(한국토지 주택공사)	16.62%
변경	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(가로주택 정비사업)	가정동 5-92번지 일원	1,681	294	LH(한국토지 주택공사)	17.49%

※ 상기의 임대주택 관련 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, 전체세대수,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,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.

붙임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(안) 의견서

성 명	(인)	연락처	
거주지 주소			
의 건			
제출일	2026년 월 일		